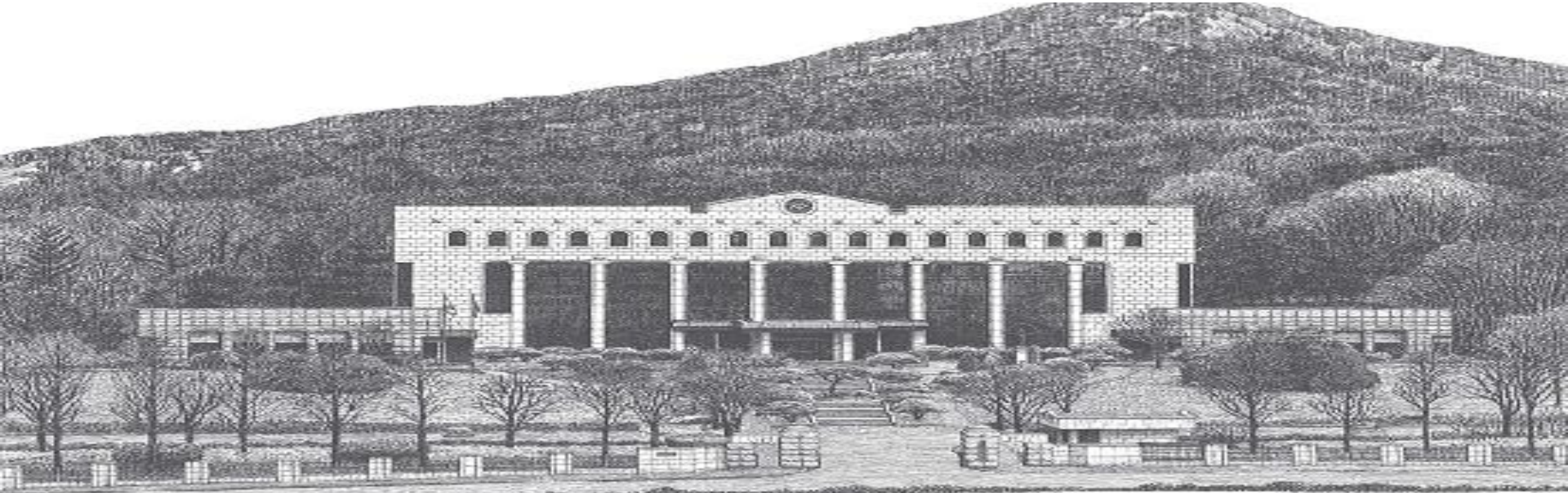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차 례

I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관

II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III

공무원의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 금지

IV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V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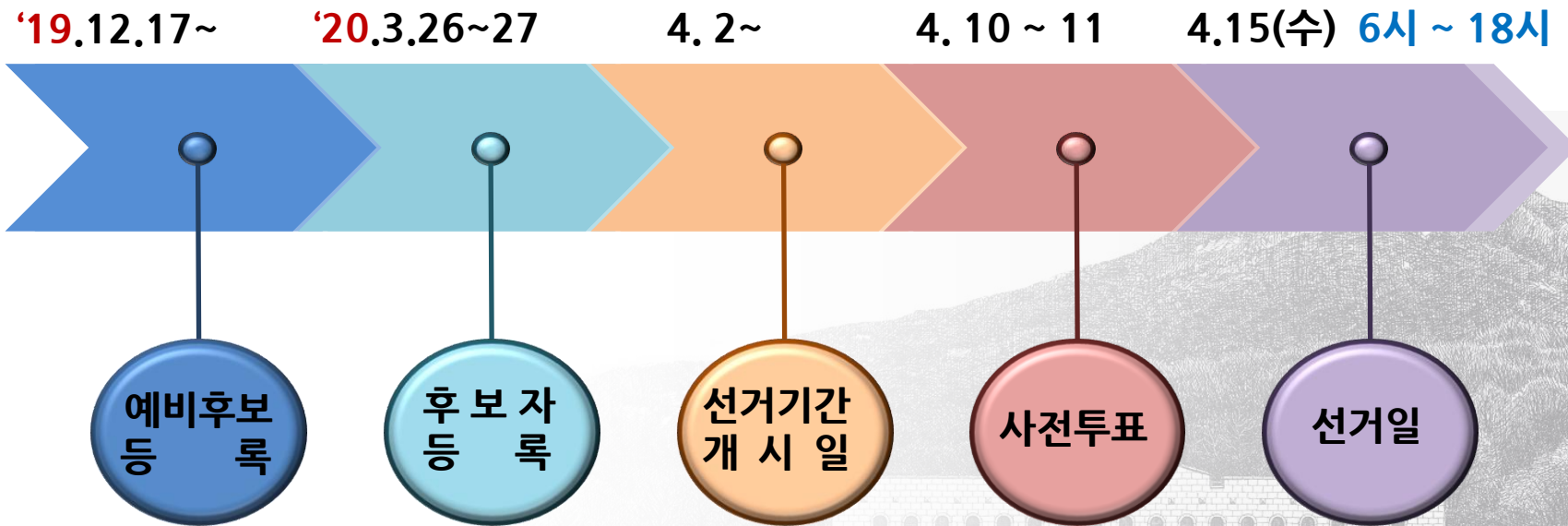
VI

기부행위 제한·금지

I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관

I.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일정



▶ 국외부재자신고 : 2019. 11. 17 ~ 2020. 2. 15

▶ 선거인명부 /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2020. 3. 24 ~ 3. 28

I.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 (제15조)

‘01. 4. 16. 이전 출생한 국민은 국회의원선거권이 있음.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은 **‘20.3.24.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여야 함.

▶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I.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관



국회의원선거의 **피선거권** (제16조)

1995. 4. 16. 이전 출생한 국민은 국회의원선거의 피선거권이 있음.

- ▶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어느 선거구이나 입후보할 수 있음.
- ▶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2020.4.15.) 현재로 산정함 (제17조).

I.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관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기한 (제53조)

- ▶ **선거일전 90일 (2020. 1. 16.) 까지**
공무원, 농협·수협 등 조합의 상근임원과 중앙회장, 교사, 언론인,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구·시·군 조직 이상 대표자등
- ▶ **선거일전 30일 (2020.3.16.) 까지**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 **그 직을 가지고** -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 **선거일전 120일 (2019.12.17.) 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II.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II.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의무 (제9조)

- 주 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 · 단체포함)
- 금지기간 상 시
- 금지내용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국회의원·지방의원 제외) 의미함.
- ▶ 지방자치단체장은 집행기관으로서 영향력이 크므로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됨.
- ▶ 공무원이 공직상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국민 모두에 대하여 봉사하는 그의 지위와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선거에서의 득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함(헌재).



II.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의무 (제9조)



할 수 있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 전에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소속 정당의 정책협의회에 참석하는 행위
- ↳ 다만,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그 정당 소속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책이나 공약을 공동으로 추천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본조에 위반됨.

II.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의무 (제9조)



할 수 없는 사례

- 공무원노조가 불법선거운동신고센터 설치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하는 행위
- 선거에서 중립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후원회대표자가 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는 행위
- 선거에서 중립의무가 있는 현직 시·도지사들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포함된 전직 시·도지사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행위

Ⅲ. 공무원의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 금지

II. 사전선거운동 금지 및 예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제60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외국인)



미성년자
(초등학생 중학생)



선거권이 없는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다만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



정부가 50%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임직원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임직원,
조합의 회장,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임직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위헌판결)**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주민자치회 포함)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단체 대표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장

Ⅲ. 공무원의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 금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사무장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 사직기한

- ▶ **사직대상**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주민자치회 포함) - 통·리·반의 장
- ▶ **내 용**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
- ▶ **사직기한** - 선거일전 90일 (2020. 1. 16.) 까지
- ▶ **복직제한** - 선거일 후 6월 (2020. 10. 15.) 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 금지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 (2020. 4. 15.) 까지 복직금지

Ⅲ. 공무원의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 금지

선거운동의 정의 (제58조①)

선거운동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판례 (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도11812 판결)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Ⅲ. 공무원의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 금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 통상적인 정당활동
- ▶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교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자동동보통신 포함)하는 행위
- ▶ 투표참여 권유활동

Ⅲ. 공무원의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 금지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등 (제57조의2 · 제57조의6)

- ▶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은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음.
⇒ 당내경선이란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을 말함.
-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장이 당내경선에 입후보한 경우에는 가능
⇒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경선운동을 할 수 있음.
- ▶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

Ⅲ. 공무원의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 금지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라도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공무원의 배우자가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아닌 경우 정당가입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하는 행위
- 명예퇴직을 앞둔 지방공무원교육원 교관이 피교육생으로서 고향 후배인 읍면장들과의 저녁 회식자리에서 “명예퇴직원을 제출했으니 도와달라”는 등의 발언은 일상적·의례적인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 96도138 판결).

Ⅲ. 공무원의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 금지



할 수 없는 사례

-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트위터나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전송하는 행위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후보자와 동행하여 후보자가 선거권자들에게 “○○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하는 동안 선거권자들과 손을 잡거나 목례를 하면서 “잘 부탁한다”라며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행위(서울고법 2004노1844)
- 동사무소 직원이 지인 8명에게 전화하여 특정 후보자가 출마한 도시의 거주자들의 성명·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여 58명의 인적사항을 받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제공한 행위
- 공무원이 동문회 등의 행사에 참석하여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



IV.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IV.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제85조①)

주 체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제한기간 상 시

금지내용

- ▶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 ▶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 ▶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IV.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제85조①)

입법취지 등

-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어 **벌칙규정이 없는 제9조와 대상행위가 선거운동 또는 특정 행위로 제한되어 있는 제85조②과 제86조①**을 보완하여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 ▶ **처 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소시효 :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한
공무원의 선거범죄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

IV.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제85조②)

주 체 ○ ○ 공무원

제한기간 ○ ○ 상 시

금지내용 ○ ○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행위

간주규정 -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 공무원이 소속직원, 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봄.



Ⅳ.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직무와 관련하여” 의미

- ▶ 직무는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
- ▶ 직무를 집행함에 즈음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외견상 그 직무에 관련한 행위에 편승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선거구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IV.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지위를 이용하여” 의미

- ▶ 행위자의 지위로 인하여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이고,
- ▶ 구체적으로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해서 행위자가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부나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을 포함한다(헌재).

IV.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

- ▶ 보조금 교부, 용자알선, 계약체결, 사업실시, 인·허가, 검사·감사 등 직무권한을 갖는 공무원이 공공단체·기관, 유관 사기업체 기타 관계 단체 및 관계자에 대하여 그 권한을 근거로 영향력을 이용하는 경우
- ▶ 공무원의 내부관계에 있어 직무상 지휘·명령권, 인사·예산권 등에 근거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공무원이 부하나 직무상 관계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선거에 즈음하여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
- ▶ 우편·철도 기타 관공서의 창구에서 주민과 접촉하는 직원이나 주민조사·우편배달 등으로 호별방문하는 직원이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주민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IV.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할 수 있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장이 신분변화에 따른 정치적 소식 등을 밝히기 위하여 취재에 응하거나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질의하여 회신 받은 내용을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회원에게 알리거나 보도자료로 제공하거나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 다만, 지지·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유권자에게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

IV.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할 수 있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지를 권유·호소하는 등의 행위 없이 출마 의지 및 정치적 견해와 함께 선거 공약을 발표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퇴직에 즈음하여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거나, 시·구정에 협조해 준 유관단체장 및 통·리·반장에게 의례적인 내용(업적·치적 제외)의 퇴임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IV.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할 수 없는 사례

- 현직 군수가 예비후보등록 당일 각과 공무원과 면장 등이 참석한 오찬 모임에서 인사말을 하면서 “오늘 이후 제가 선거전에 몰입합니다. 여러분들도 유권자이고 동료이지만, 여러분의 한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와 부탁의 인사를 드립니다”라고 발언한 행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도7814).
- 공무원노동조합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같은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대법원 2005도213)

IV.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86조①)

주 체

- ▶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지방의원 제외)
- ▶ 선상투표 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 ▶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 ▶ 통·리·반장 /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그 구·시·군 이상 조직 대표자

IV.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86조①)

상시 금지 행위

- ▶ 소속직원,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홍보 행위
⇒ “업적”이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미담사례를 발굴·소개하려는 취지였다 하여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 참여, 기획 실시 관여하는 행위
⇒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지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함
- ▶ 정당,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IV.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86조①)

선거기간 중 금지되는 행위

-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기공식이 아닌 준공식,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 기공식, 즉시 공사를 시작하는 기공식은 선거기간 중에도 가능함.
- ▶ 정상적인 업무외의 출장행위
⇒ 그 행위가 명목상·형식상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한 출장행위의 외관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로, 그 실질에 있어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함
- ▶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IV.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할 수 없는 사례

- 구청 공무원이 특정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내용을 수록한 책자 220권을 관내 동사무소 및 각 부서에 무료 배포하고, 지구당의 연말불우이웃돕기 사실을 구청 소식지에 게재한 행위
- 지방의회가 그 홈페이지의 일부에 개설·운영하는 의원별 홈페이지에 의회에서의 활동내용이 아닌 입후보예정자인 지방의원을 선전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의회 홈페이지에 등록 되어 있는 (영상)회의록을 의원 개인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 공무원들이 현직 도지사인 후보자의 방송사 대담·토론자료를 작성하거나, 토론회의 예행연습을 한 행위



IV.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할 수 없는 사례

- 구청장이 민방위 교육장에서 선거구민인 민방위대원들을 대상으로 “주택공사 등에 택지개발을 유도하면서 구정목표를 설명하고, 내가 책임지고 분양해 주겠다고 얘기했다.”는 등 교육·관광·노인 복지·교통·비행장 이전·택지개발 등에 관한 본인의 업적 홍보행위
-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출마의 변·선거공보·선거공약서 등의 제작에 관여하고, 선거홍보 대책회의에 참여하는 행위
- 군청 기획감사실에서 군정기획·평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관 중 이던 자료를 후보자 측에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



IV.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할 수 없는 사례

- 공무원들이 인터뷰·토론회 자료, 선거용 프로필을 작성하여 기자 등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보도되게 한 행위
- 공무원이 후보자가 되려는 시장의 중도퇴임과 관련하여 시민여론 조사를 하는 행위
- 읍장이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 000 집으로 가서 후보자 ○○○과 ◇◇◇에게 “한 사람이 후보를 양보하라”고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 정상적 업무외 출장을 한 행위



V.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제한

V.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¹ (제86조②)

주 체

▶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단체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닌 경우,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도 포함

금지기간

▶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2020. 2. 15 ~ 4. 15)

⇒ 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V.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¹ (제86조②)

금지행위

- ▶ 정당의 정강·정책,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에게 홍보·선전하는 행위
⇒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 가능함
-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 창당·합당·개편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해 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가 된 경우,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의 당원만을 대상으로 한 공개행사에 의례적 방문은 가능
- ▶ 통·리·반장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긴급민원이 발생한 경우 참석 가능

V.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제한



할 수 있는 사례

- 제한기간이 아닌 때에 소속 당원만이 참여하는 정당집회 또는 제한기간 중 참석이 금지되지 않는 창당·합당·개편 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서 같은 정당 소속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지지연설을 하는 행위
⇒ 다만,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 공개행사에서의 지지연설은 위반
- 정당의 중앙당이 개최하는 대의기관의 회의(전국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구성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무방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통·리·반장 회의를 개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권한대행자인 부단체장이 아닌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는 것은 무방함.

V.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제한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사무소 등 방문”이란 정치적 또는 선거운동의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는 행위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말한 후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행위도 위반임.(서울서부지법 2008고합157)
- “일체의 정치행사”에는 정당간부와 당연직 구성원인 단체장들이 참석하는 정당 내 지방자치정책협의회와 당원협의회도 포함됨.
- 지방자치단체장이 제한기간 중에 소속 정당이 당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설명회, 불우이웃돕기·일일찾집 등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V.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² (제86조②제4호)

-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 행위 제한

주 체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속 공무원

제한기간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2020. 2. 15 ~ 4. 15)

금지내용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행사,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V.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제한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 행위 제한 (제86조②제4호)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 ①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 ②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③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④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⑤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단, 종전 범위를 넘어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 후원 행위는 제외



V.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제한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 행위 제한 (제86조②제4호)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 ⑥ 집단민원 · 긴급민원이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⑦ 국가유공자 위령제, 국경일 기념식,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기념행사
- ⑧ 법령 · 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설명회
- ⑨ 읍 · 면 · 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 나 전례적인 고유축제
- ⑩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 · 시설 · 장비 등 지원행위



V.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제한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 행위 제한 (제86조②제4호)

규정 해설

- 개최지역에 불구하고 선거구민을 주된 대상으로 하거나, 그 대상에 불구하고 선거 실시 지역에서 행사를 개최·후원 불가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것이 법률·명령에 직접 근거한 경우만을 뜻하며,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시달한 기본시책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근거한 행사로 봄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행사에 후원명의만 제공한 경우에도 그 행사를 후원하는 행위에 해당함

V.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제한



할 수 있는 사례 예시

- 『지방재정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절차 범주 안에서 한정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예산설명회 개최
- 『국민건강증진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보건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교실의 운영, 『정보화촉진 기본법』 및 조례에 의한 주민컴퓨터교실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영화제·무료음악회, 지역문화제, 지역민속축제, 걷기대회, 마라톤대회 등 개최행위
- 제한기간 중에 개화·파종·생육조절 등에 시기적 제한이 많은 화훼류·농산물 박람회를 개최하는 행위

V.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제한



할 수 있는 사례 예시

- 구(동)민의 날 행사는 오래 전부터 계속하여 그 시기에 개최하여 온 경우에는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로 보아 상시 개최·후원 가능
- 『아동복지법』 및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상적인 어린이 날 기념행사 및 부수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제한기간 전에 직무상 행위로서 자신에 대한 선전·업적홍보 없이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현장에서 주민의견 청취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행위 일환으로 업무추진 목적 안에서 이동·직소 민원실 운영은 가능하나, 제한기간 중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접 참석불가

V.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물 발행 제한·금지 (제86조⑤)

주 체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속 공무원

금지내용

-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발송할 수 없음.
⇒ 홍보물 - 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 ▶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발송할 수 없음.



V.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물 발행 제한·금지 (제86조⑤)

예외적으로 상시 허용되는 홍보물

- ①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
- ②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 ③ 집단민원·긴급민원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④ 소속 직원의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 ⑤ 각종 통계·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백서·연감·총람 등의 홍보물

V.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물 발행 제한·금지 (제86조⑤)

예외적으로 상시 허용되는 홍보물

- ⑥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
⇒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 제외, 이하 같음.
- ⑦ 환경·의료·교통·조세·건축 등에 대한 민원안내서, 반상회보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
- ⑧ 역사·지리·문화·특산물·관광명소 등 안내 홍보물
- ⑨ 재난관리·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물
- ⑩ 지자체 청사의 입구, 외벽면, 담장에 게시하는 홍보물 ⇒ 직명 게재 불가

V.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물 발행 제한·금지 (제86조⑤)

규정 해설

- **1종** - 제작형태·규격·배열방법 등이 모두 동일한 것
- **1회** - 1종의 홍보물을 발행·배부계획에 따라 당해 분기 내에서 배부시기·방법을 다르게 하여 배부하더라도 주민 별로 1회 이내에서 배부하는 경우는 1회로 봄
- **제한지역** - 선거구 안. 다만, 선거구 밖이라도 선거구민의 왕래가 빈번한 같은 생활권역에서 홍보물을 설치·배부하는 것은 제한됨
- **제한대상** - 선거구민, 출향인사 등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 **청사범위** - 본청 외에 동주민센터, 사업소 등 지방자치법상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 포함



V.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제한



상시 발행·배부할 수 있는 홍보물

- 사업설명회나 연두·초도순시 시 사업계획 등을 설명하면서 부수하여 PPT로 작성한 프리젠테이션용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구두설명을 위한 보조자료로 보아 제한받지 않음
- IPTV로 청사 내 사무실·민원실 등 내부공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상황 등을 알리기 위한 시정소식을 방송하는 행위
- 지자체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사업계획 등을 게시하는 행위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의 특정 사업을 추진하고자 관계주민이나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서한문 발송 행위
- 수돗물품질보고서 등 법령에 따라 발행·배부하는 홍보물

V.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제한



분기별 1종 1회의 제한을 받는 홍보물

- 지방자치단체가 통장·반장을 대상으로 다음 연도에 추진할 사업계획이 게재된 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참석자를 대상으로 시정현안 사업의 개요를 설명하는 홍보물을 상영하는 행위
- 일간지에 지방자치단체의 황토사과 특구지정 신문광고를 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활동상황을 홍보하기 위한 녹화물을 제작하여 관할구역을 운행하는 버스를 통하여 방송하는 행위
- 일간지에 대학유치 광고 행위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 실적을 함께 광고하는 행위

V.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사참석 제한 (제86조⑥)

주 체

▶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단체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닌 경우,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도 포함

금지기간

▶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V.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사참석 제한 (제86조⑥)

금지행위

-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음.
⇒ 근무시간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외에도 참석할 수 없음.
- ▶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음.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함.
⇒ 법 제86조②제3호에 따라 참석·방문이 허용되는 경우 참석 가능함.
⇒ 연가·반가·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지각·외출·조퇴 신청 후 참석은 금지됨.



V.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사참석 제한 (제86조⑥)

규정 해설

- 선거구 밖에서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참석이 제한되지 않음.
-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2에 따라 그 주관 행정기관장이 정한 행사의 절차·방법·규모 안에서 관련기관·단체가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로 봄.
-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라도 공공성이 없는 그 기관의 사적인 행사(직원 체육대회, 등산대회 등 내부적 행사)는 참석 금지됨.

V.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광고출연** 금지 (제86조⑦)

주 체

▶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단체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닌 경우,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도 포함

금지행위 및 금지기간

▶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
그 밖의 광고에 **상시** 출연할 수 없음.

V.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광고출연** 금지 (제86조⑦)

규정 해설

- 제86⑤에 따라 허용되는 홍보물 중 방송·신문·잡지·시설물 등 통상적인 광고매체에 지방자치단체장 출연은 금지되나, 분기별 1종 1회로 발행한 인쇄물의 경우는 동조 제7항의 광고출연행위로 보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 등에 따라 법인·단체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어 그 법인 등을 위하여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도 금지됨.
- 선거구외 광고, 전국단위 광고, 해외지역 광고도 금지됨.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신문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광고 출연은 허용됨. 다만, 재외선거 입후보예정자인 경우 선거일전 90일 부터 법 제93조③에 위반됨.



VI. 기부행위 제한·금지

VI. 기부행위 제한·금지



기부행위 제한·금지 (제112조)

주 체 누구나 (후보자, 정당, 제3자 등)

금지기간 상 시

기부행위의 개념 (법 §112①)

- ▶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VI. 기부행위 제한·금지



기부행위 개념 해설 (제112조①)

- ▶ ‘기부행위’란 상대방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일부 대가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불균형으로 그 일부가 무상이나 다름 없는 경우를 말하며, 비록 유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도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일반인이 얻기 어려운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기부행위로 봄.
- ▶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선거운동원이든 정당원이든 상관없으며, ‘기관·단체·시설’은 당해 선거구 안에 활동의 근거를 두고 있는 다수인의 계속적인 조직이나 시설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민법」상 법인과 같이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갖춘 단체로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음.

VI. 기부행위 제한·금지



기부행위 개념 해설 (제112조①)

- ▶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는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자도 포함함
- ▶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은 사유는 불문함.
- ▶ 기부행위를 약속한 후 비록 사후에 이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속을 함으로써 기부행위 위반죄는 성립됨.

VI. 기부행위 제한·금지



주체별 기부행위 제한 내용(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주체별	제한기간	제한내용
국회의원·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예정자)와 그 배우자	상시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주례행위 포함)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정당선거사무소장, 후보자 나 그 배우자의 가족, 선거 사무관계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	선거기간 전	당해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 금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기부행위 금지
제3자(누구든지)	상시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 금지



VI. 기부행위 제한·금지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제112조②)

- ▶ 제1호 -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 ▶ 제2호 - 의례적 행위
- ▶ 제3호 - 구호적·자선적 행위
- ▶ 제4호 - 직무상의 행위
- ▶ 제5호 - 법령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 ▶ 제6호 - 위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VI. 기부행위 제한·금지



기부행위 예외 - 직무상 행위 (제112조②제4호)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구호·자선사업을 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자선행위
- 선거일 전 6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연두·초도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 공무원, 유관기관·단체장, 의례적 범위 안의 주민대표에게 3천원 미만의 다과류를 제공하는 행위



VI. 기부행위 제한·금지



기부행위 예외 - 직무상 행위 (제112조②제4호)

-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 **긴급한 현안**이란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보호, 재난 및 안전사고 수습을 위한 긴급지원,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와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조례를 제·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함.
- 선거기간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 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 물품구매·공사·역무 제공 등에 대한 대가 제공 행위
-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이행 행위



VI. 기부행위 제한·금지



기부행위로 본다는 간주규정 (제112조④)

-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봄.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봄.
 - 종전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조례 제·개정 없이 확대변경하는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VI. 기부행위 제한·금지



기부행위 관련 사례예시 -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중앙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한 기본시책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 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행위도 포함함.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및 조례에 따라 각종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 국가보훈기본법에 §23에 따라 순국선열의 날·추석·설에 위문금품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주차장법 §9에 따라 공영유료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는 행위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13, 같은 법 시행령 §9에 따라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우수 자원봉사자 격려를 위하여 공로연수를 실시하는 행위



VI. 기부행위 제한·금지



기부행위 관련 사례예시 - 각종 시상·포상·표창 관련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식에서 모범 학생에게 시상(부상 제외) 하는 행위 (어린이 집, 노인대학 등의 졸업식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단위의 행사(행사 참가대상자와 실제 행사참가자가 전국규모인 행사)를 개최하고 입상자에게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상장 및 부상을 제공하는 행위
- 표창시 상장의 형태는 반드시 종이 제작한 경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인 상패·트로피·감사패 등의 형태로 수여 가능
-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 회장인 생활체육회의 행사 시에 체육회 명의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부상과 시상금을 수여하는 행위



VI. 기부행위 제한·금지



기부행위 관련 사례예시 - 축·부의금품 제공 관련

-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상근직원(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직원 제외),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의 결혼·사망시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부의금품·화환·화분을 그 명의로 제공행위
-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연말·설·추석·생일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 소속 상근직원에는 지방의회·보건소·동사무소 직원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법 §79조에 의한 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포상하는 경우 의례적인 범위의 부상 수여 가능
 - ⇒ 구청장이 포상시 동 직원, 시장이 포상시 구·동 직원 포함



VI. 기부행위 제한·금지



기부행위 관련 사례예시 - 각종 공모 관련

- 지방자치단체가 관광홍보용 책자에 게재하는 등 업무에 직접 활용할 목적으로 사진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우수 작품 제출자에게 상장·부상을 수여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에 직접 활용하기 위하여 자원재활용 관련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우수 아이디어 제출자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 지방자치단체가 표어·포스터·수필 등 작품을 전시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표창하는 경우에는 우수자에게 상장을 수여할 수 있으나 상금을 수여할 수 없음.



VI. 기부행위 제한·금지



기부행위 관련 사례예시 - 의례적인 행위(제112조②제2호)

-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 기타 경조사에 축·부의금품 제공행위
- 친목회·향우회·종친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 범위 안에서 회비납부 행위
-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른 헌금 행위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의 관혼상제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정치자금법 상 공무원 관련 규정

➤ 정당의 발기인·당원이 될 수 없음

- 국가(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음.

다만, 고등교육법 §14①·②에 따른 교원(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은 가능

➤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음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음

➤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 관련 법제처 유권 해석

-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에 따라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됨(2005.11.7.)



Q & A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